

#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 2025학년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7인	2인
재적임원	7인	2인
참석임원	7인	1인

I. 회의일시 : 2026년 01월 20일(화요일) 오전 11: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6년 01월 08일 서면통보)

II. 장 소 :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회회의실(대진대학교 본관 3층)

### III. 임원 출결 사항

○참석임원

- 이 사( 7 인) : 윤은도, 박광훈, 이태열, 김화옥, 김옥, 조대형, 한인희
- 감 사( 1 인) : 윤갑중

○결석임원

- 이 사( 0 인) : 없음
- 감 사( 1 인) : 노기팔

○참석직원 : 백학문 법인사무국 사무국장(간사)

### IV. 부의안건

1. 학교법인대진대학교 정관 개정 안
  2. 대진대학교 규정 개정 안
  3. 대진대학교 교원 보직 임용 안
  4. 대진대학교 직원 보직 임용 안
  5. 학교법인 법인사무국 직원 임용 안
- 긴급안건 : 1. 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안

### V. 회의내용

윤은도 이사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최를 선언하다. 당초 개최 통지한 내용대로 이사회를 진행한다.

2025학년도 제7차 이사회 회의에 앞서 긴급안건으로 ‘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간서명	박 광 훈	김 옥	윤 갑 중
-----	-------	-----	-------

안' 을 2026년 01월 08일 서면통보한 5개 안건 이후 제6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서면통보 한 5개의 안건 상정 전에 긴급안건 상정안을 먼저 의결하다.

백학문 간사 : 긴급안건인 '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안' 에 대하여 본회의 제6호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

윤은도 이사장 : '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안' 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17조 3항 및 학교법인대진대학교 정관 제28조 3항에 근거하여 본회의 제6호 의안으로 안건 상정 여부를 요구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이사,  
김옥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

참석이사 전원찬성으로 안건상정이 의결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호 의안으로 '학교법인대진대학교 정관 개정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1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김 옥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한인희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호 의안에 대하여 김옥 이사께서 동의하고 한인희 이사께서 재청 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이사,

간서명	박 광훈	김 옥	윤 광중
-----	------	-----	------

김옥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호의 의안인 ‘학교법인대진대학교 정관 개정 안’ 은 불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2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규정 개정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2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김화옥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조태형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2호 의안에 대하여 김화옥 이사께서 동의하고 조태형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이사,  
김옥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2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규정 개정 안’ 은 불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3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교원 보직 임용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3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간서명	박 광 훈	김 옥	윤 은 도
-----	-------	-----	-------



의하고 김화옥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이사,  
김옥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4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직원 보직 임용 안’ 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5호 의안으로 ‘학교법인 법인사무국 직원 임용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5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박광훈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이태열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5호 의안에 대하여 박광훈 이사께서 동의하고 이태열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이사,  
김옥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5호의 의안인 ‘학교법인 법인사무국 직원 임용 안’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서명	박 광 훈	김 옥	윤 은 도
-----	-------	-----	-------

- 다 음 -

● 대진대학교 학생복지팀원 이: 을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법인사무국 직원(일반직9급)으로 전보.

- 이상 1명 (임용일 : 2026.02.01.)-

윤은도 이사장 : 제6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6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한인희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조태형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6호 의안에 대하여 한인희 이사께서 동의하고 조태형 이사께서 재  
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이사,  
김옥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6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안'  
은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이사회의를 간서명 대표임원 선임(안)입니다.

조태형 이사 : 이사회의를 간서명 대표임원으로 박광훈 이사, 김옥 이사, 윤갑중 감사  
를 선임할 것을 동의하다.

김화옥 이사 : 재청하다.

간서명	박광훈	김옥	윤갑중
-----	-----	----	-----

윤은도 이사장 : 이사회의를 대표임원으로 박광훈 이사, 김욱 이사, 윤갑중 감사로 선임할 것을 조태형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화옥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이사회의를 간서명 대표임원으로 박광훈 이  
사, 김욱 이사, 윤갑중 감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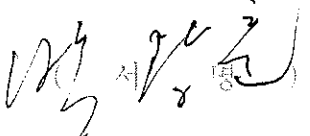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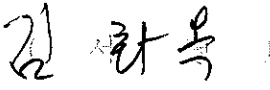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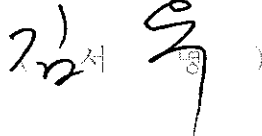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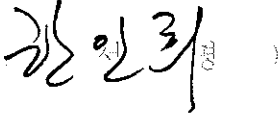

윤은도 이사장 : 기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11:20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6년 01월 20일 화요일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회

간서명	박 광 훈	김 욱	윤 갑 중
-----	-------	-----	-------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 날인하다.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	사	장	윤	은	도	
	이	사	박	광	훈		
	이	사	이	태	열		
	이	사	김	화	욱		
	이	사	김		욱		
	이	사	조	태	형		
	이	사	한	인	희		
	감	사	윤	갑	중		

# 학교법인대진대학교 정관 개정

## 학교법인대진대학교 정관

학교법인대진대학교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5 조의 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 이외의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며, 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은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26.01.20.>

③ ~ ⑪ (현행과 동일)

제 76 조 (대학, 대학원 등의 하부조직) ①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교학팀, 행정실을 두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팀(실)장은 일반직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교학팀, 행정실에 필요에 따라 유관 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01.20.]

제 77 조 <삭제 2026.01.20.>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백영훈	김우	윤갑동
-----	-----	----	-----

# 대진대학교 규정 개정

## 교원인사규정

교원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승급)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 ~ 3. 현행과 동일

4. 승급심사(구, 주기평가)에서 탈락된 이력이 없는 정년이 보장된 교원이 승급을 위한 업적평가 대상기간이 정년퇴직 예정일로부터 2년전 이후까지 해당될 경우 승급심사를 면제한다.

5. 현행과 동일

③ ~ ④ 현행과 동일

부칙(시행일 2026. 3. 1.)

1 ~ 3. 현행과 동일

4. (경과조치) 제21조(승진임용원칙), 제34조(재임용 요건) 변경규정 시행 후 2025년 10월 1일 이전 임용자의 승진임용, 재임용평가는 가장 먼저 도래하는 최초 평가대상 1회에 한하여 구규정을 따르며, 그 이후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5 ~ 8. 현행과 동일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백광훈	김우	문갑동
-----	-----	----	-----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규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시행일 2026. 3. 1.)

1 ~ 2. 현행과 동일

3. (경과조치) 2025년 10월 1일 이전 임용자는 변경 규정 시행 후 최초 도래하는 재임용 평가 1회에 한하여 구규정을 따르며, 이후 평가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4. (경과조치) 2025년 10월 1일 이전 임용자는 변경 규정 시행 후 승진/트랙전환 최초 도래 시점부터 3년간 변경규정 적용을 유예하여 구규정으로 평가하며, 이후 평가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백	김	문
	영	욱	갑
	호		종

## 겸임교원 임용규정

겸임교원 임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자격) 현행과 동일

1 ~ 3. 현행과 동일

4. 임용일 기준으로 70세가 초과한 자는 임용할 수 없다.(재임용 포함)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백광훈	김옥	윤갑중
-----	-----	----	-----

## 초빙교원 임용규정

초빙교원 임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임용자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용일 기준으로 70세가 초과한 자는 임용할 수 없다.(재임용 포함)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백병훈	김우	윤갑중
-----	-----	----	-----

# 정년트랙전임교원 업적평가등에관한규정

정년트랙전임교원 업적평가등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1> 연구업적 평가기준

1 ~ 2-2. 현행과 동일

2-2-1. 디자인 분야(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에 한함)

구분	분야	내용	점수			
			국제			국내
			A급	B급	기타	A급
디자인 분야	전시	개인전	300	150	60	120
		2인전	150	75	30	60
		단체전(3인 이상)	100	50	20	40
	공모전 (저명기관 주최)	최고상/대상(대통령상은 200% 인정)	300	-	-	120
		특선 이상	100	-	-	40
		추천작가, 초대작가 자격의 출품	-	-	-	10
	공공 프로젝트	조각(100*100*100이상 A급/이하 B급)	150	75	-	50
		영상미디어(설치면적 150*150cm이상 A급/이하 B급)	150	75	-	50
		평면 면적기준(200호 이상 A급/이하 B급)	150	75	-	50
	기획	전시	300	150	60	120
평론	미술관련 전문지	100	35	-	10	

<세부사항> 현행과 동일

2-2-2. 현행과 동일

2-2-3. 미술분야(미술만화게임학부에 한함)

<표> ~ [공모전] 현행과 동일

[퍼블리싱] 표 생략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만화(웹툰포함)의 경우 글/그림 두 분야 모두 참여한 경우 단독 업적으로 인정하며, 글/그림 중 한 분야에만 참여할 경우 본교 연구업적 저서 기준의 인정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 현행과 동일
- 게임 분야는 연구업적의 경우 기획/그래픽디자인/캐릭터디자인/프로그램 개발 분야에 따라 참여 인원을 본교 연구업적 논문 인정율을 적용하여 평가함(기획/개발/디자인 총괄의 경우, 각 분야별 총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 연구업적 논문 주저자 인정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 이하 현행 동일

2-2-4. 현행과 동일

2-2-5. 현행과 동일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박민훈	김욱	윤갑문
-----	-----	----	-----

# 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 의과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의과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대진대학교 정관 제75조 ②항 및 제78조에 따라 의과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학 본부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의과학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과대학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대학원의 조직 구성, 직무 분장, 상설기구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 규정을 준수하되, 의과학 분야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대학원의 운영 및 행정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대학원 학칙 등 상위 규정에 따른다.

제3조(원장의 직무) ① 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원장은 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원 운영 및 예산집행을 총괄한다.

제4조(기본 방향) ① 대학원은 의과학 교육·연구의 조기 정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지역 보건의료 및 의과학 관련 학문·산업 생태계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한다.

② 대학원은 제1항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역의료 정책연구, 의과학 중점 산학협력, 의과대학과 수의과대학 유치 관련 과제를 상호 연계된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한다.

③ 제2항의 전략과제에 관한 연차·분기 실행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조직 및 기구) 대학원에는 다음 각호의 조직 및 기구를 둔다.

1. 원장
2. 교학행정실
3. 운영위원회
4. 자문위원회
5. 인사위원회
6. 상설기구: 의대유치추진단, 의과학중점산학협력추진단, 지역의료정책연구원

간서명	이광훈	김욱	원감동
-----	-----	----	-----

## 제2장 원장

제6조(원장) ① 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대학원 운영 및 행정을 총괄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대학원의 중장기 발전 및 연차 운영계획 수립·집행 총괄
2.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3. 예산(안) 편성·집행 총괄 및 결산 관리
4. 대외협력 및 협약 추진 총괄
5. 상설기구의 설치·운영 관리 및 성과관리 총괄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장 교학행정실

제7조(설치) 대학원에 교학행정실을 두며, 교학행정실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대학원의 행정·교학·정책 및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실장은 6급 이상의 팀장으로 보한다.

제8조(기능) 교학행정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사 행정(입학, 수업, 학적, 성적, 졸업, 교육과정 등)
2. 학생 지원(장학, 상담, 진로·취창업 지원 등)
3. 입학전형 운영 및 전형 관리 지원
4. 주요 정책 추진사업 및 상설기구 운영 지원
5. 의과대학 유치 관련 행정·정책 지원
6. 대외협력 및 산학협력,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각종 위원회와 소위원회 운영 지원
8.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장 위원회

### 제1절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운영위원회는 대학원 운영의 적법성·투명성, 재정의 적정 집행, 주요 정책 추진(상설기구 포함)의 실행력 및 성과관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둔다.

제10조(심의·의결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졸업 등 주요 학사 행정에 관한 사항
2. 의과대학 유치 로드맵 및 분기 추진 점검(상설기구 간 역할 조정 포함)
3. 예산 편성 및 재정 집행에 관한 사항
4. 중요 대외 협약 및 대외 공표(홍보)에 관한 사항

간서명	이광훈	김욱	유갑동
-----	-----	----	-----

5. 주요 정책 추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의료정책연구원
- 의과학중점산학협력추진단
- 의대유치추진단

6.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원장이 부의하는 기타 중요 사항

제11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내·외 교수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는 교학행정실장이 수행한다.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정기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서면심의 등 세부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 제2절 자문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자문위원회는 원장 직속 기구로 두며, 의과대학 유치 및 대학원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정책의제·교육·산학협력과 관련하여 자문한다.

제15조(자문 사항)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의과대학 유치 전략(대외 공감대 형성 및 지지 기반 구축 방향 포함)
2. 지역의료 정책의제 발굴 및 공론화 방향
3.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CBME) 모델 및 협력 기관 연계 방향
4. 의과학 중점 산학협력·기술사업화 파트너 발굴 및 추진 방향
5. 교육과정 운영 방향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중요 협약의 사전 자문(운영위원회 상정 전 검토 의견 제시)
7. 대학원의 발전 기금 모금 등 미래 발전 전략
8. 기타 원장이 의과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사항

제16조(구성 및 운영) ① 의대 유치를 위한 정무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미래 발전 전략, 발전 기금 모금, 대정부 홍보 등에 관하여 원장에게 자문하며,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은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위원은 의료·공공·산업·학계 등 학내외 교수와 외부 전문가로 원장의 추천으로 행

간서명	백광훈	김욱	문갑부
-----	-----	----	-----

정부총장이 위촉한다.

- ⑤ 자문위원회는 필요시 외부 자문교수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상설기구별로 각각 원장 직속 기구의 자문위원회의 분과 성격의 자문위원회를 학내외에 둘 수 있다.
- ⑥ 간사는 교학행정실장이 수행한다.

### 제3절 인사위원회

제17조(설치 및 성격) ① 대학원은 의과학 분야 우수인재 확보 및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인사위원회의 심의는 독립적인 절차로 진행하며, 교원인사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적극 수용한다.

제18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객원교원의 신규 채용을 위한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2. 의과학 발전에 이바지할 석좌교수, 특임교수 추천을 위한 후보자 적합성 심의
3. 의과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신규 채용 초빙 분야, 지원자격, 총원 인원 등 심의
4. 원장이 부의하는 기타 인사 관련 사항

제19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내외 교수와 전문가로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 ③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 위원을 2인 이상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간사는 교학행정실장이 수행한다.

제2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③ 심의 결과는 '적정·부적정·보완' 의견서로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제척·회피 및 비밀 유지) ① 위원은 심의 대상자와 이해충돌(공동연구, 지도·피지도, 친족관계, 직접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한다.

- ② 심의자료 및 결과는 인사 관련 기밀로써, 위원은 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장 상설기구

### 제1절 공통

제23조(조직 구성) ① 대학원에 의대유치추진단, 의과학중점산학협력추진단, 지역의료정책연구원의 상설기구를 둔다.

간서명	박광훈	김우	민갑동
-----	-----	----	-----

1. 각 상설기구를 대표하는 기관장으로 단장 또는 연구원장을 둔다.
2. 각 단에는 3인 이내의 공동 단장과 5인 이내의 부단장을 둘 수 있다.
3. 전담 또는 겸직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인사 관리) 행정부총장은 상설기구의 기관장과 구성원을 임명한다.

제25조(직무) 각 상설기구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차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제26조(연차 운영계획) ① 상설기구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연차 운영계획(사업, 예산, KPI 포함)을 수립한다.

② 연차 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7조(보고 및 점검) ① 상설기구는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교학행정실에 보고한다.

② 상설기구는 연 1회 성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회의) ① 각 상설기구는 필요시 자체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29조(예산 및 회계) ① 상설기구의 예산은 대학원 예산 범위에서 편성한다.

② 집행은 본교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겸직) 상설기구 구성원은 필요시 겸직을 할 수 있으며, 겸직 범위는 원장이 정한다.

제31조(성과평가) ① 상설기구의 성과 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평가지표는 KPI,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 위험관리 등으로 한다.

③ 평가 결과는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1. 우수
2. 보통
3. 개선 권고

④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 제2절 의대유치추진단

제32조(설치 목적) 의대유치추진단은 의과대학 설립·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과 대외 실행을 총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주요 직무) 유치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대 유치 로드맵 수립 및 실행
2.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근거자료 축적
3. 공론화 프로그램(토론회·공청회·세미나 등) 기획·운영
4. 대외 공감대 형성 및 지지 기반 구축 활동
5. 국회,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 대응 및 건의
6. 대학 내 관련 조직 간 협력 및 역할 조정
7.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8.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간서명	이규광훈	김우	윤갑봉
-----	------	----	-----

제34조(연차 산출물) 유치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산출물을 작성한다.

1. 유치 추진 로드맵(연차·분기별)
2. 설립 타당성 및 근거 보고서
3. 대외 커뮤니케이션 자료(핵심 메시지·FAQ 등)

### 제3절 의과학중점산학협력추진단

제35조(설치 목적) 의과학중점산학협력추진단(이하 “산학추진단”)은 의과학 분야 산학협력과 기술사업화를 통하여 대학원 발전 재원과 실행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주요 직무) 산학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 과제 발굴·기획·협상 지원
2. 공동연구·위탁연구 수주 및 실무 지원
3. 의료기관·기업·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4.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대학 규정 준수 지원
5. 창업·기업가정신 관련 프로그램 기획 지원
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37조(연차 산출물) 산학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산출물을 작성한다.

1. 산학협력 파이프라인 목록
2. 산학협력 성과 보고
3. 정부 과제 지원·수주 실적 보고

### 제4절 지역의료정책연구원

제38조(설치 목적) 지역의료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역의료 문제 진단과 정책연구를 통하여 의과대학 설립·운영의 근거를 축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주요 직무)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 취약지 분석 및 의료인력 수급 연구
2. 지역의료 정책 개발 및 정책제언
3.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CBME) 모델 연구
4. 보건의료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공공·민간 연구과제 기획 및 참여
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40조(연차 산출물)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산출물을 작성한다.

1. 지역의료 정책 브리프 또는 백서
2. 의대 설립 근거 보고서 개정판
3. 협력네트워크 운영 결과 보고

간서명	백영훈	김호	유장평
-----	-----	----	-----

## 제6장 재정

- 제41조(예산 및 집행) ① 대학원의 예산은 본교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하되, 의과학 분야 산학협력 수익금의 일부는 대학원의 연구 및 유치 활동을 위해 우선하여 배정될 수 있도록 대학 본부와 협의한다.
- ② 대학원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운영 지침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 ③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분기별 집행 현황을 본부 기획처에 보고한다.

## 제7장 입학전형

- 제42조(입학전형의 방법) ①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한다.
- ② 원장은 전형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고사 또는 실기 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전형의 세부 평가 항목, 배점, 제출 서류, 평가 절차 및 합격 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고 모집 요강으로 공고한다.
- ④ 전형 서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본서류 및 모집 요강에 명시하는 서류로 한다.
- 제43조(합격자 선발 및 부적격 처리) ① 합격자 선발은 전형 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선발인원 및 세부 선발 방식은 모집 요강으로 정한다.
- ② 면접에서 면접 위원 전원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 ③ 지원 자격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은 취소할 수 있다.
- 제44조(면접 위원의 구성·위촉) ① 원장은 입학전형의 면접을 시행하기 위하여 면접위원을 위촉한다.
- ② 면접 위원은 3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면접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분야 본교 전임교원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 면접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 ⑤ 간사는 교학행정실장이 수행한다.
- ⑥ 면접 위원의 위촉 기간은 해당 전형 기간에 한정하며, 전형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45조(원장의 면접 평가 불참 및 전형 관리) ① 원장은 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면접 평가(점수 부여)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 ② 다만 원장은 전형 운영 총괄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면접 위원 위촉 및 면접 위원장 지명
  2. 전형 절차의 적정 운영 및 준수사항 점검

간서명	박광훈	김옥	원갑중
-----	-----	----	-----

3. 전형 관련 기록·자료의 관리 총괄

4. 이의제기 및 민원에 대한 절차적 검토 및 처리 총괄(필요시 운영위원회 보고)

제46조(제척·회피 및 비밀 유지) ① 면접 위원은 지원자와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자의 평가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한다.

② 면접 위원은 면접자료 및 평가 결과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형 종료 후에도 이를 누설할 수 없다.

제47조(면접의 운영) ① 면접은 지원자의 학업수행능력, 전공·연구 역량, 연구 윤리 및 태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② 면접은 표준화된 평가표에 따라 점수화하여 평가하며, 세부 항목·배점·부적격 기준은 모집 요강 또는 별도 기준으로 정한다.

③ 면접 결과는 기록·보관하며, 점수 집계·검증, 회의록 작성, 이의제기 처리 등 전형 관리의 세부 절차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장 대외협력 및 협약

제48조(대외협력) 대학원은 교육·연구·산학·정책 협력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49조(협약의 사전검토) ① 협약체결 전 교학행정실은 표준 서식, 법무 검토, 개인정보·보안, 지식재산, 재정 부담 등을 사전 점검한다.

② 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는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중요 협약의 내부심의 및 보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협약은 체결 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1. 재정 부담 또는 학교 자원(인력·시설·장비 등) 투입이 명시되는 협약

2. 개인정보 또는 대량 데이터 처리·이전이 수반되는 협약

3. 지식재산권 귀속·수익배분·기술이전 등 권리관계가 포함된 협약

4. 장기적 의무부담 또는 분쟁 가능성이 큰 협약

5.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약

② 중요 협약의 체결 이후 진행 현황 및 성과·위험성은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의과학 분야 산학협력 특성상 신속한 협약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규로 정하는 범위에서 원장 전결로 체결할 수 있다.

## 제9장 산학협력단과의 역할 분담

제51조(산학협력단과의 역할 분담) ① 의과학중점산학협력추진단은 의과학 분야 산학협력 과제의 발굴·기획·협상 및 실무 지원을 담당한다.

② 연구비 집행, 계약·회계 처리, 지식재산권의 관리·처분 등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

간서명	이규광훈	김옥	윤갑동
-----	------	----	-----

하여 처리한다.

- ③ 추진단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업무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협의체를 학내·외에 둘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준비·운영 사항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간서명	백승광훈	김유	윤갑동
-----	------	----	-----